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 등에 과징금
부과·징수〉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61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구 현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현승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4. 7.
3. 회 부 일 : 2026. 4.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징수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제9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6조제3항).

Ⅲ. 검토의견

□ 법 제3조제1항(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을 위반한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할회사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삭제 및 제1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과징금) ① ~ ③ (생략)	제9조(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삭제>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②(생략)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	③ ----- ----- ----- -----

현행	개정안
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법 제17조에 따른 죄의 고발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를 준용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 ----- ----- -----.

□ 현행법 제9조제4항은 제3조제1항(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¹⁾ 위반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²⁾, 법 위반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 등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 또한, 현행법 제16조제3항은 공정거래법 제104조³⁾를 준용하고

-
-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들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과징금) ④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4조(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①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있으나 이는 이미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의 납부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과징금 부과 전에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 어느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 않음.

□ 대법원도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⁴⁾하여, 법적 근거 없이 분할 전 회사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불허하였음.

□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3항 및 제4항⁵⁾은 법 위반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① 분할

②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2.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4)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298 판결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530조의10). 그런데 이때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라 할 것인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사업자의 조직변경을 통하여 과징금 부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에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과징금 부과)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된 회사,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③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중 어느 하나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6)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신회사(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와 공고의 방법
 2.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3. 1주 또는 출자 1좌의 금액
 4.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 또는 지분권자의 출자지분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 부여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
 5.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와 그 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회사의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
 7. 신회사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준비금의 액
 8. 채무자에서 신회사로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9. 신회사의 이사·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10. 신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209조 각호의 사항
- ②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사항
 2. 신회사설립 당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거나 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사항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 이에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인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하여,

위반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제102조제2항7) 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전에 이루어진 분할·분할합병(제102조제3항) 또는 회생절차상 새로운 회사 설립의 경우(제102조제4항)에도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과징금 조항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유사입법례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3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개정안은 현행 제9조제4항의 합병 규정을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과징금 부과)제2항을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과징금 부과)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맹본부가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가맹본부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다만,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사항이라는 점에서 제16조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보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 제9조 과징금 조항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과징금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 제한과 직접 관련되는 실체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준용방식에 의할 경우 규율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음⁸⁾.

□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적 정합성을 고려해 필요한 입법조치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 사업자의 법 인격 변경 및 소멸시에도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실체적 개정이므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과징금 부과 절차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준용(제16조) 하는 조항보다 과징금 조항(제9조)에 개정안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15

8) 법제기준과 실제(2024. 5. 국회사무처 법제실) 225p. 가.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사항 준용